

납품대금 연동제, 이런 점이 궁금해요?



1. 기성품 구매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해당되나요?

-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작하여 납품을 하는 거래라면 제조위탁에 해당되나 규격화, 표준화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단순구매로 수·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약정서에 연동 조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는?

-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탁기업이 연동제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연동 조항 미기재 발급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 명령 등 행정제재를 위탁기업에 부과합니다.

3. 연동 약정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며, 연동조건 협의,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3년 1월말 개설예정)

4.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시하는 가격지표가 없거나, 활용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③ 그 밖에 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 등과 같은 가격정보를 기준지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 위해 합의를 유도·회유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을 하는 경우는?

-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탈법행위 시 중기부 및 지방중기청이 직권조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 탈법행위 :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유도·회유 등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 납품대금 연동제 문의 및 상담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지역혁신과

연번	담당기관	전화번호	연번	담당기관	전화번호
1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905, 7948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2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9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9
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9	10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5
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5	11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5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1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6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13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6
7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3	1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공감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적용대상

- 위탁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 수탁기업 : 중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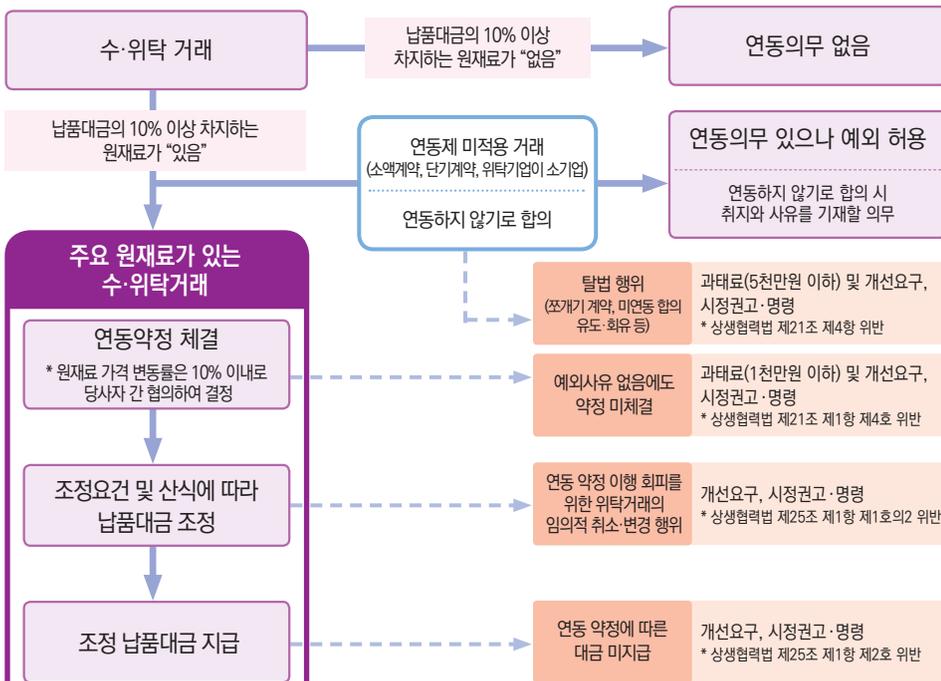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년 10월 4일)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 연동제 작동 절차, - - - : 위반 행위시 제재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1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예시 ▶ 동 케이블, Wire Rope

2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 원재료 :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공물, 중간재를 포함

예시 ▶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동”, Wire Rope에 사용되는 “경강선재”

3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예시 ▶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bok.or.kr), e-나라지표(index.go.kr), 조달청(pps.go.kr),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4 조정요건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 단, 변동률의 범위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0~±10%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예시 ▶ 동 : ±3% 이상, 경강선재 : ±1% 이상

5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예시 ▶ 변경 단가(원/EA) = 기존 단가(원/EA) + {품목별 변동가격(원/Kg) × 품목별 소재중량(Kg/EA) × 반영비율(100%)}
* 품목별 변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품목 기준가격(원/Kg) - 기준시점의 품목 기준가격(원/Kg)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가전 회사 A사와 협력사인 모터 제조업체 B사는 콤프레셔(공기 압축기)의 납품가격을 분기별로 조정하는 특별약정을 '22년 10월 자율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콤프레셔의 주요 원재료인 철 스크랩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철강금속신문 고시가(생철, 남부지역 평균가)”를 기준지표로 삼아 3% 이상 등락한 경우, 현재 납품 단가에 ‘철 스크랩 기준가격 변동분 × 철 스크랩 중량’을 더한 값을 새로운 납품가로 정함으로써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대한 부담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